

'5.24 평화와 균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일시: 2013년 5월 22일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관: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최: 1325호 네트워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평화외교포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 후원: (사) 한국여성재단

'5.24 평화와 균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일시: 2013년 5월 22일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관: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최: 1325호 네트워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평화외교포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 후원: (사) 한국여성재단

순 서

- 사회: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 축하

- ☐ Luis Cruz 주한필리핀대사
- ☐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발제

- ☐ 발제1 : 한반도 분단 극복과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 이현숙 여성외교평화포럼 상임이사
- ☐ 발제2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 참여
 -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토론

-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 유엔 아시아 태평양 여성안보평화 자문그룹 위원
- ☐ 김엘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 ☐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목 차

1. 축사

- ▶ Luis Cruz 주한필리핀대사 4
- ▶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7

2. 발제문

- ▶ 발제 1: 한반도 분단 극복과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9
 - 이현숙 여성외교평화포럼 상임이사
- ▶ 발제 2: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 참여 14
 -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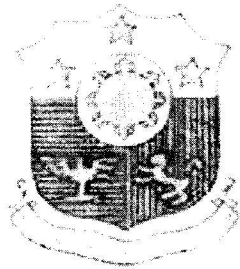
3. 토론문

- ▶ 토론 1: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수립 31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 토론 2: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33
 -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유엔 아시아 태평양 여성안보평화 자문그룹 위원
- ▶ 토론 3: 젠더화된 한국 사회와 안보, 여성의 참여 37
 - 김엘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 ▶ 토론 4: 한국에서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기지촌여성노인 지원필요 39
 -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4. 자료

-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42
- ▶ 유엔 안보리 결의 1820호 46
- ▶ 유엔 안보리 결의 1888호 50
- ▶ 유엔 안보리 결의 1889호 57
- ▶ 유엔 안보리 결의 1960호 62

축 사



PASUGUAN NG PILIPINAS

EMBASSY OF THE PHILIPPINES

SEOUL

CONGRATULATORY MESSAGE

In conflict situations and in the ensuing breakdown of social structures, it is the women who often suffer as a result of accompanying violence.

It is with this background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pproved UNSCR 1325 in October 2000, which called for the the adopt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conflict prevention and search for durable solutions. The UN document required parties to a conflict to respect women's rights and to suppor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 negotiations and in be given attention during repatriation and resettlement, rehabilitation reintegration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philippines is no stranger to conflict. It went through decades-old struggles with local a secessionist movement and an armed group advocating the adoption of a socialist form of government. The first was recently resolved with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while the second is undergoing a protracted process.

Aware of the objectives of Resolution 1325, Philippine civil society group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teamed up to ensure that the concerns women are not overlooked in our search for durable peace. After all, women are distinct stakeholders to these conflict as much as the men.

Their collective action resulted in the inclusion of the section in the current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0-2016), affirming the Philippine government's commitment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325. This made the Philippines 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do so. Specifically, the Philippine Action plan calls for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fully comply with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 process and address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 situations.

I am therefore humbled with the recognition that your group-the 1325 Network - has given to Philippine efforts to mainstream gender perspective in search for durable peace. I hope that the process that we underwent will serve to inspire your group, and other Korean NGOs of similar persuasion, in your own search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 wish to assure you that just as we have helped you in the 1950s during the Korean War to restore peace and democracy in your country, we shall again be ready to support you in this endeavor to come up with your own national plan to adopt UN Resolution 1325.

Let me therefore congratulate Network 1325 for hosting this forum as a meaningful way to celebrate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LUIS CRUZ
Ambassador

축 사

루이스 크루즈 필리핀대사

오늘 날 여성들은 분쟁 상황과 연이은 사회구조의 붕괴 속에서 이에 수반되는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 방지 및 분쟁의 지속 가능한 해결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분쟁의 당사자가 모든 평화 협상 과정과 분쟁 후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의는 귀환과 재정착, 사회복귀와 분쟁 이후 재통합과 재건과정에서 여성들의 특별한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분쟁에 익숙합니다. 수십 년 간 필리핀 내 분리운동과 사회주의 정부 수립을 옹호하는 무장단체와 투쟁을 겪어왔습니다. 분리운동과의 분쟁은 최근에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무장단체와의 협상과정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 시민 사회 단체들과 정부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1325호의 목표를 본받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성들의 요구가 중시되도록 협력하였습니다. 결국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쟁 속에서 명백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공동 행동으로 필리핀 개발 계획 (2010-2016년)에 평화안보 부문을 통합하였고, 이 계획은 1325호를 이행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공동행동으로 필리핀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행동계획은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무력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헌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1325호 네트워크> 소속 여러분들이 항구적인 평화를 찾는데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려는 필리핀의 노력을 인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겪은 이 과정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한국 내 다른 NGO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50년대 한국전쟁 동안 한국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우리 나라가 도움을 드렸듯이, 우리는 다시 한 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1325호 네트워크>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의미 있는 토론회를 주최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 사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입니다.

1325호 네트워크 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여성평화외교포럼 관계자,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개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 공동대표와 활동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1981년 NGO 유럽 11개국 49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5월 24일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노력이 가시화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이 날을 도입하여 ‘북한 임산모와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 행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를 채택하면서 분쟁 예방과 평화 및 안보는 여성과 매우 밀접한 이슈이며, 여성의 시각에서 세계 평화와 군축, 안전의 문제를 접근하고, 여성을 전쟁의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평화, 안보의 유지 및 증진 노력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2월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 시행할 제4차 한국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 문제를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고, 몇 년 동안 남북의 갈등은 고조되어 왔고, 대화조차 중단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 교류의 숨통 역할을 해 왔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한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여성이 중심이 되는 남북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지혜를 모아야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군대 주둔 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자 문제, 전쟁 중 벌어진 위안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낙후된 지역에서 자행되는 성착취 및 성매매 관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행동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더욱 진지한 논의와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분단 극복과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평화포럼 상임이사)

1.

한반도는 수 없는 외침과 식민지, 전쟁을 겪고 지금도 정전협정 아래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위협이 일상화되고 그로 인해 외국군대가 주둔해 있는 분쟁지역이다. 언제라도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무력분쟁지역이기도 하다. 2013년은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불길한 예측이지만 전과 다른 특별한 노력이 구상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정전협정 100주년을 맞을 지도 모른다.

오랜 분쟁은 한반도에 특수한 분쟁피해 여성들을 만들어냈다. 공녀, 환양녀, 전쟁 미망인,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양공주, 윤락여성, 관광기생, 기지촌 여성 등의 별칭은 여성들이 겪은 분쟁피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극심한 전시 성폭력 피해 국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야만적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약소 국가가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분쟁예방과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국가의 자화상임에 틀림없다. 60년째 분단이 지속되면서 이산가족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위험천만한 탈북여성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원폭피해여성들의 고통과 지뢰피해 여성들의 고통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군범죄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전시 성폭력과 분쟁으로 입은 여성들의 피해와 고통은 국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의 실패가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여성들을 평생동안 얼마나 특수한 고통 속에 살게 하는가를 보여 준다.

전후 재건 기에 전쟁 피해자 여성들이 사회문제화 되자 사회개혁에 뜻을 둔 여성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대책활동에 나섰다. 전쟁 무의탁 소녀들, 전쟁미망인, 윤락여성들에게 경제자립을 위한 미용, 양재, 타자, 농업, 축산, 원예, 가내수공업, 편물, 수예 등의 기술교육과 취업알선활동, 선도사업, 생활개선운동, 구호활동, 등을 벌였다.

재건 기 이후로는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 통일 운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원폭 피해자 지원활동과 반전, 반핵 활동, 민주화운동, 기지촌 여성운동, 일본군 '위안부' 대책활동, 성폭력 특별법 및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운동, 남북여성교류 운동, 반전, 평화운동,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미활동과 여성6자회담, 갈등해결교육운동, 지뢰대책활동 등 여성들의 평화노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다양한 평화구축활동과 분쟁예방 활동은 저평가되고 여성들의 분쟁 경험은 공식 평화구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고 여

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남북한의 정치와 외교는 여전히 남북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들에게 여성의 눈으로 세계와 사물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명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여성은 점차 자율성을 회복하며 여성부재의 영역에 여성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여성의 삶을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새 질서 형성에 힘을 보태왔다. 이런 노력은 공·사 영역 전반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세계적으로 도도한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 흐름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여성들은 외교, 안보, 통일 영역이나 정책이 여성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이 무관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어떤 정책도 여성들의 관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외교, 안보, 통일정책 실패로 인한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나 변화를 만들어 내는 평화조성자, 평화구축자로서 자신들을 재정의(redefinition) 하기 시작했다.

정전 60주년은 남성들의 관점으로 60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남북갈등 해소 노력과 접근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과 지식이 포함될 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은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적 희망이 될 수 있다.

2.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세계여성들의 각성과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2000년 유엔 안보리에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새로운 주장과 인식이 등장했다. 평화과정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여성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젠더관점을 반영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평화 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었다. 안보리는 2000년 10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이런 인식을 공식화하게 된다. 이 역사적인 결의안은 무력분쟁에서의 여성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분쟁해결과 평화구축의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는 결의안 1325호(UN SCR 1325)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공식화한 이후 이를 지원하는 4개 후속 결의안, 1820 (2008), 1888 (2009), 1889 (2009), 1960 (2010)을 추가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평화,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화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 5개 결의안들의 중심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 강화

UN SCR 1325는 여성조직(women's agency)을 평화조성자와 평화구축자로 강화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쟁예방, 평화과정, 조기복구, 거버넌스, 평화활동 등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결의안 1889 (2009)는 결의안 1325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 지표를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성폭력과 불처벌 종식

2008년에 채택한 획기적인 결의안 1820은 분쟁 시 성폭력을 특별히 군사,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전쟁 전술로 인정함으로써 전시 성폭력을 다루게 될 법률적, 정치적 전망을 크게 변경시켰다. 결의안 1820 (2008)은 광범하게 퍼진 분쟁관련 성폭력을 종식시키라고 요구하고 불처벌(impunity)을 종식시키기 위한 책임제도(accountability)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에는 결의안 1888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엔 안보리가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결의안은 분쟁 시 성폭력 담당 사무총장 특별대표라는 고위급 지도력을 임명하게 하여 유엔의 성폭력 대응활동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 책임제도 제공

결의안 1960은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의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책임이 있거나 성폭력 가해자로 의심되는 당사자들의 명단을 만들 것을 위임하고 있다. 관련제제위원회는 전시 성폭력담당 사무총장특별대표로부터 보고받고 명단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결의안 1960은 전시성폭력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평화표준을 세우고 구체적 이행과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안보리가 채택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과 회원 국가들의 책임이다. UN SCR 1325는 회원국들이 의사결정과 평화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여성, 여아들을 보호하며, 성인지 훈련을 실시하도록 국가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의 1325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회원국들에게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거나 다른 전략을 개발해서 1325 이행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이에 힘입어 2013년 5월 현재, 41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한국정부도 현재 국가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다.

국가행동계획은 국가수준에서 결의안 1325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조정하는 도구역할을 하게 되며 하나의 국가정책 안내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행동계획은 평화협상, 평화구축활동, 분쟁예방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분쟁지역에서 성폭력과 젠더관련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구호와 복구 지원에 여성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더 잘 촉진시키고, 더 잘 제도화하고, 더 잘 조정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국가행동계획은 안보, 외교정책, 개발, 성평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정부부처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누구인지도 기술하게 된다.

2011년 말에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미국은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분쟁예방과 평화구축활동의 동등한 파트너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가행동계획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미국 안보와 세계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의 동등한 파트너가 될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보호되고 그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될 때 치명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고 평화는 가장 잘 조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행동계획은 단순한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평화, 화해, 개발, 성장, 안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여성의 견해와 관점을 미국의 외교, 안보, 개발 노력에 완전하게 통합시키겠다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2010년 12월에 발표된 미국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QDDR)>도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 국무부의 외교와 개발정책에 젠더시각의 제도화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이 외교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Women are at the center of our diplomacy and development efforts - not simply as beneficiaries, but also as agents of peace, reconciliation, development, growth, stability."

이와 같이 국가행동계획은 단순히 정부 부처 간의 협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부처나 기관들의 내적,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다. 첫 단계는 사무국과 대표부의 전략계획과 자원 계획(Strategic and Resource Plans)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고위급 간부들이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여성, 평화, 안보의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한국정부는 2013년 1월, 1325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국가행동계획 수립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성인지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관계부처와의 회의 및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이었다. 초안 작성 후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국가행동계획 작성 절차와 준비단위 등 제안된 주요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UN SCR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하고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받아들이며, 여성들을 평화구축과 분쟁예방의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드리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정치적 의지 표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분단과 남북한 대립이라는 한반도 상황과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국가행동계획 초안이 여성, 평화, 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기보다는 기존의 각 부처 정책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나열한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지표, 시간표, 예산, 연례보고, 검토 메커니즘 등이 적시되지 않은 등, 구체성이 떨어져 행동계획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과 함께 한국여성의 역사적 분쟁경험, 남북의 현재적 갈등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상황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분단상황을 극복하여 평화를 구축해가는 데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의 과제로 모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에서 UN SCR 1325의 요구대로 한반도의 분쟁예방과 분단 극복 및 평화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일을 함께 할 동등한 파트너로 여성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표, 시간표, 예산, 책임소재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평화, 안보 의제가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의 중심의제로 제도화 되도록 보다 치밀한 국가행동계획을 새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구상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수정,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초안은 과연 정부 내 UN SCR 1325 전문가가 있는지, 정부 고위급 간부들의 1325 이행의지는 얼마나 존재하는 것인지, 조정 메커니즘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만큼 불안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결핍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구조나 정부, 국회, 엔지오 3자 틀을 상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작업 방식으로 국가행동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작업 방식은 길고 지루한 토론과정을 거치는 약점이 있지만 참가자들에게 주인의식(ownership)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보다 풍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작업 방식이야말로 정부가 여성들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받아드리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참여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I.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1. 유엔 안보리 1325호의 의미

첫째,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최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으로서 여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평화과정의 모든 측면에 연결시키는 정치적 틀이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을 분쟁의 희생자 뿐 만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자로서 인식해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 및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1325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와 안보 관련한 각각의 모든 활동이 성평등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 유엔 구성원이 이 결의를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 셋째, 1325호 채택은 UN이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평화·안보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구한 여성들의 20년 이상의 요구와 투쟁과 활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서 여성운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넷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유엔에서 안보 개념을 국가중심적인 안보 개념에서 ‘인간안보’ 개념을 포함한 개념으로 안보 의미의 확대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1325호를 비롯하여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문들은 평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¹⁾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후속결의문²⁾

안전보장이사회는 1325호 이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4개 더 채택하였다. 결의 1820호(2008), 결의 1888호(2009), 결의 1889호(2009), 결의 1960호(2010)를 채택하였다. 결의

1)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주요내용, 4가지 핵심규정은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실천방안」, 『평화, 안보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신낙균 의원실, (2011.7.8.) 참조할 것. UN Women, Peer-Review of UN Women E-Learning Training Course on Women, Peace and Security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1.22-1.23), 회의 자료 참조

2)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세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1325호 네트워크> 외, (2013.4.10) 35-36쪽.

문 1889호는 1325호 내용을 확인하고 평화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1889호는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위해 자금, 자원 접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1325호 이행에 대한 모니터와 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포함하고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요구하였다. 안보리 결의문 1820호, 1888호, 1960호는 성폭력 예방과 성범죄에 대한 면책 종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2000)	분쟁에서 여성성취를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연결시킨 최초의 역사적인 결의문
1820(2008)	유엔 안보리가 분쟁과 연결된 성폭력을 전쟁의 선술로 인정하고 성폭력의 예방을 국제 평화와 안보유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하고 평화유지, 사법, 평화협상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 최초의 결의문
1888(2009)	리더십을 규정하고 사법 전문성 및 보고 메커니즘을 만들어 안보리 결의 1820호의 이행을 위한 수단을 강화함.
1889 (2009)	조기회복과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배제, 그리고 여성의 요구를 수용한 계획입안과 재정수립의 부족을 보여줌.
1960(2010)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한 책임체계 제공

자료: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 5.

1325호와 1889호는 평화형성과 분쟁 예방에서 여성 리더십에, 1820호, 1880호, 1960호는 성폭력과 연관된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주제3)

1) 평화유지

- 이 주제는 평화지원활동의 성주류화와 평화유지에서 여성 총원(군, 경찰, 민간)의 증가를 통해서 다 차원적인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 안보리는 평화유지활동에서 여성의 숫적 증가를 요구한다. 현재 PKO군대인력의 2%가 여성. UN 평화유지국(DPKO)의 목표는 2014년까지 20%로 올리는 것이다.
- 평화유지와 젠더문제는 평화유지자로서 여성 충원을 확대하는 문제 또는 여성의 군인화가 아니라 평화 유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인간안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문제다. 여성들이 평화

3) 주제별 접근은 Maria Butler,Women, Peace and Security Handbook: Compilation and Analysi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Language 2000-2012, October 2012

유지활동에 독특하고 강력한 기여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 평화유지활동에서 성주류화는 임부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없이 지속가능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안보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 현장에서, 사전배치와 사후 배치에서 젠더교육은 평화유지 인력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게 하는데 효율적이다. 평화유지임무에서 성폭력 대응이 증가하고 있으며 훈련은 성폭력에 대한 예방, 인식 및 대응을 증가시키고 있다.
-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인지적 접근만이 남, 녀, 남아, 여아의 서로 다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평화유지 관련 조항>

1325호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
OP4,5,6,15,17	OP6,7,8,9,15	OP10,11,12,19,21,25	OP4,7	OP10

* OP는 Operational Paragraph의 준말로 안보리 결의에 있는 작동문단을 의미함.4)

2) 분쟁예방

- 이 주제는 폭력적인 분쟁의 발생, 확산, 재발생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 여성을 분쟁예방의 건설적인 참가자로 인정한 안보리는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안보리는 회원국가가 국내, 지역, 국제 기관과 분쟁예방 메커니즘에서, 분쟁예방 대화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모든 행위자가 분쟁 예방을 위해 분쟁 관련 체계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게 중요하다. 1889호는 안보리가 1325호 이행을 평가할 의미있는 지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접근법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 분쟁예방, 인간안보 향상, 평화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개발에 중요한 대상자로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한다. 분쟁예방을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보 성취에 중요하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1	OP12	OP1,7,11,21	-	-

3) 보호

- 이 주제는 분쟁 기간과 그 이후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안전을 보증하는데 있다.

4) 유엔 결의문은 서문(preamble)과 작동문단(operational paragraph)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민간인 보호의 규범적인 틀과 메커니즘은 여성평화안보의 보호 요소와 중복되고 강화되고 있다. 현재 민간 사상자의 수는 무장분쟁의 전투원의 사상자보다 크다.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와 같이 성별에 따라 남녀가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 분쟁에서 여성과 여성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안보리는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을 존중하고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여성의 보호는 여성 참여와 분리해서는 안된다. 여성은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의도한 보호 프로그램의 기획과 이행에 협의하고 개입하여야한다. 안보리는 특히 강제이주여성 보호 메커니즘 개발에 여성과 여성조직과 협의하도록 요구.
- 안보리는 사무총장에게 국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하여 회원국가에게 여성보호를 위한 지침과 훈련교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안보리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지침과 전략을 요구하고, 회원국가가 성폭력의 피해자에게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6,8,9	op1,3-5, 8-10	OP3,6,8-9,12,25-26	OP2,6,7,10,12	OP10

4) 참여

- 이 주제는 평화과정, 선거과정, 유엔 정책결정지위와 더 큰 사회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에 초점을 둔다.
- 안보리는 1325호와 1889호에서 모든 유엔 임무에서 여성 참여와 고위직에 지명된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안보리는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의 진전과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 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 임무에서 여성참여의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분쟁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치와 경제 정책결정에서 여성 참여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1-4,6,8,16	op8,12	op14,16,18,19	op1,4,6,10-11,14-15,17-19	-

5) 평화과정

- 이 주제는 공식적인 평화과정 및 비공식적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가와 평화협정에서 성인 지적 관점을 통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안보리는 여성의 안보와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평화협정에 젠더대응적 규정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협정에서 여성의 이익에 적절한 이슈와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이후 과정, 기관, 메커니즘에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공식적인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는 여성의 권리와 우려와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고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협정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점을 인정하면서 안보리는 평화과정에서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참여와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
- 평화과정과 평화협정은 변화를 위한 주요한 기회이며 촉매제를 나타낸다. 여성들이 조기에 완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대응력을 높일 것이다. 여성의 존재가 평화협정에서 젠더 대응적 규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것은 분쟁이후 정치, 경제, 법률적, 안보 구조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2,8,16	op4,12	op16,17	op1	서문

6) 성폭력

- 이 주제는 분쟁과 분쟁이후 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률과 확산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 젠더 역할의 양극화, 무기의 확산, 사회의 군사화, 법과 질서의 붕괴 등이 분쟁 동안 성폭력과 젠더 폭력을 낳는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충격은 분쟁이후 그 개인과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안보리는 성폭력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성폭력을 사람을 지배하고 모욕을 주며 위협하고 강제이주시키는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안보리는 평화유지 관련 결의문에 성폭력 예방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를 다루고, 성폭력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 국가 기관을 강화 하고 분쟁이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폭력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를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이 대표가 담당할 의제는 1) 형사처벌 면제를 끝내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며, 2) 여성의 권리를 찾고 치유하기 위해 여성을 세력화하고, 3)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동원하며, 4) 강간을 전쟁의 전술로서 인정 하도록 하며, 5) '분쟁에서 성폭력 대항하는 유엔 활동'을 통해서 조율된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10,11	op1-15	op1-15,17,18,20,22-26	op3,12,16	OP1-3,OP5,OP7-8,OP13

7)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EA)

- 이 주제는 평화유지군인, 평화유지경찰과 유엔 인력이 범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다.
- 유엔은 성적 착취와 성적 유린 행위를 심각한 악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즉결해고를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 불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
- 성적 착취와 유린을 막기 위해 안보리는 회원국가들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기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파병국가들은 엄격하고 강력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관련 활동을 유엔에게 보고해야 한다.
- 해외파병군인과 유엔 인력에게 사전예방차원에서 젠더교육을 실시.
- 성폭력 가해 여부를 조사

1325	1820	1888	1889	1960
OP5	OP 7	OP 20, 21	-	OP11 OP16

8) 재건과 평화구축

- 이 주제는 평화구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분쟁 예방, 해결과 분쟁으로부터 복구하는데 완전한 참여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인간안보의 구현에 중요하다. 분쟁이후 상황에서 여성의 우선성을 고려한 지방, 국가적, 국제적인 체계의 대응은 공동체의 안정성과 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평화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여성의 개입은 분쟁이후 계획에서 젠더 분석을 증가시키고,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하며, 장기적인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참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와 우려는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존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작동 절차로서 여성을 포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 안보리는 여성 리더십의 향상과 여성조직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평화구축 조치에서 여성의 보호, 권리와 요구에 대한 훈련을 요구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안보리는 사무총장이 평화구축과 회복 노력에서 여성 참여와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만들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 5,6,8,16,17	OP 6-9,13,15	OP 10-13,16,18-19,21,25-26	OP1,3-4,14-15,19	서문

9) 인도주의적 지원과 강제이주

- 분쟁관련한 강제이주 문제를 포함하여 분쟁과 분쟁이후상황에서 여성과 여아의 권리, 우려와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지원과 지원 분배를 하기 위해 여성, 남성, 여아와 남아가 분쟁에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 모든 분쟁당사자는 난민과 관련한 법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국제법을 지지해야만 한다. 사무총장은 여성단체들과 협의하여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안보리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하고 집행할 때 여성들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고려해야만 한다. 인도주의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사무총장이 인도주의 요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안보리는 인도주의 인력이 성폭력 대항훈련을 받고 평화과정에서 인도주의 관련 협정에서 성폭력 문제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분쟁과 분쟁이후에 성폭력 희생자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개발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여성들은 장단기 구호와 회복 노력에서 개입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긴급대응 이행과 모니터링에서 참여를 포함한다. 성인지적 분배 메커니즘을 통하여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4,OP12	OP6,13	OP17	OP12	-

10) 군축, 동원해제, 재통합 (DDR)

- 군축, 동원해제와 재통합의 계획과 이행에서 성인지적 접근법과 여성의 대표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25	1820	1888	1889	1960
op8,13	op10,13	op17,13	op8-10,op13	-

II.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 참여의 모범적인 사례

1.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국가행동계획은 유엔 회원국가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여성평화안보 목표를 안보, 국방, 외교, 사법, 평화구축에 대한 국가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정한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할 구상을 상세하게 담은 문서이다.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02/32)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가와 다른 행위자들에게 목표와 시간표를 갖는 분명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격려”하고 “분쟁이후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가 직면하게 되는 특정한 제약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개발할 것”을 격려했다. 2004년과 2005년에 안보리는 의장성명⁵⁾에서 회원국이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포함하여 1325호 이행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2005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013년 5월 13일 현재 41개국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덴마크(2005년 채택, 2008년 개정), 영국(2006년 채택, 2010년 개정), 노르웨이(2006), 스웨덴(2006년 채택, 2009년 개정), 코트디부아르 (2007), 스페인(2007), 스위스(2007년 채택, 2010년 개정), 오스트리아(2007년 채택, 2012년 개정), 네덜란드(2007년 채택, 2011년 개정), 아이슬란드(2008), 핀란드(2008), 우간다(2008), 라이베리아 (2009), 벨기에(2009), 포르투갈(2009), 칠레(2009), 시에라 레온(2010), 필리핀(2010), 르완다(2010), 콩고민주공화국(2010), 캐나다(201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10), 에스토니아(2010), 프랑스(2010), 이태리(2010), 네팔(2011), 세네갈(2011), 그루지야(2011), 세르비아(2011), 크로아티아(2011), 기니(2011), 기네 비소(2011), 슬로베니아(2011), 브룬디(2011), 아일랜드(2011) 미국(2011), 리투아니아(2011.12), 호주(2012.3), 가나(2012.10), 독일(2012.12), 키르기즈스탄(2013)이다.⁶⁾

2.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 참여의 모범적인 사례

1) 필리핀⁷⁾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정부와 비정부의

5) S/PRST/2004, S/PRST/2005/52

6) <http://www.un.org/womenwatch/dap/ist/f-naps> (검색일: 2012.5.13)과 <http://www.gaps-uk.org/NAP.php> 참고

7)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mplementing the UNSCRs 1325 and 1820. <http://www.sulongnetwork.ph/new/resource/philippine-nap-women-peace-and-security>. draft as June 8, 2010 (검색일: 2013.5.4):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Act for Peace.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1820: Carmen Lauzon-Gatmaytan, "Conflict Prevention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 what's in it for us?". GPPAC 토론회, 30 October 2012, New York.

평화 활동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⁸⁾

2007년 3명의 여성이 대학교에 모여 1325호의 홍보와 이행을 위해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12월 처음으로 국제여성단체(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er), 필리핀시민사회단체(Sulong CARHRIHL), 필리핀여성위원회 (the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가 1325호 전국 워크숍을 조직했다. 2008년에는 지방차원에서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그룹들은 평화과정대통령자문관실(Office of the Presidential Advisor on the Peace Process)이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주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초기에 1325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1820호를 포함하는 활동이 결합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 국가행동계획을 이끌었다. 다음은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한 주요한 활동이다.

* 2009. 3 국제여성단체(IWTC), 필리핀시민사회단체(Sulong CARHRIHL), 필리핀여성위원회, 평화과정대통령자문관실을 대표하는 그룹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이 준비위원회는 국가행동계획의 형성을 통해서 1325호와 1820호 이행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 협의과정을 촉진하는 임무를 가짐. 이 그룹은 지역협의회를 지원하고 준비위원회 성원이 될 시민사회조직을 지명하는데 동의함. 이 시민사회조직에 포함된 단체는 루손 지역에 Concerned Citizens of Abra for Good Government, 비사야스지역에 Panaghiliusa sa Paghidaet-Negros 그리고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Dialogue임.

- 미리암대학 평화교육센터, Gaston Z. Ortigas Peace Institute, Women and Gender Institute-미리암대학, 민다나오 여성위원회, Lupasug Bangsa Moro Women이 준비위에 포함됨.
- 협의하는 기간에 working document로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초기행동계획안을 준비함.
- 지역협의회를 조직해 여성평화분쟁에 대한 상황적 분석, 평화의 비전, 평화구축과 관련한 여성들의 기획,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제안들을 논의.

* 6개 지역 이해당사자 (regional cluster multi-stakeholders) 협의회 진행- 관련된 정부 부처 대표와 여성평화인권 관련 시민사회조직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 (2009.8-2009.10)

* 2009. 10 2개의 워크숍.

- 다양한 지역 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국가행동계획 초안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IWTC가 후원한 전국확인워크숍(national validation workshop)에 제출.
- 정부부처 대표들이 참가한 워크숍이 개최되어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인가하고 진척시킴

8) 2012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Report 2012)에 따르면 필리핀은 135개국 중 8위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항상 10위안에 있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135개국 중 108위이다.

- * 협의과정을 종료하기 위하여 전국확인워크숍(national validation workshop)에서 나온 제안을 수렴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지역협의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코멘트와 제안을 받음.
- * 2010년 3월 한명의 독립적인 촉진자(자문관)의 지원 하에 준비위원회가 국가행동계획의 마지막 편집을 함.
- * 2010. 1 행정명령 865호에 따라 1325호와 1820호를 이행하기 위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전국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on Women, Peace and Security)가 조직.
- * 2010.3.25 미리암대학에서 국가행동계획 발표.
- * 2010.11.17 국가행동계획에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단체와 평화단체는 독자적으로 '1325호 여성행동'(The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 act 1325)을 결성함.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의하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돕고, 국가행동계획이 분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과 연결되도록 하며, 국가행동계획을 모니터링함.

2) 네덜란드

(1) 1차 국가행동계획(2008-2011)⁹⁾

정부 부처, 시민사회-NGOs, 여성단체, 대학, 싱크탱크는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에 참여함.

- 2007년 6월 쇼크랜드협약

네덜란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기관, 교회, 조합과 개인들이 쇼크랜드협약을 체결하여 새천년개발목표 실현과 1325호 이행에 대한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 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2007년 12월 4일 쇼크랜드 2차 협약

6월 협약을 토대로 2차협약의 합의를 통해 파트너들은 1325호 이행을 위한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보여줌.

- 2007년 네덜란드정부 대표와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작성. 대부분 외교부에서 정기적인 공동모임을 통해서 진행. 이 모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여성인권 활동가, 평화활동가 그리고 평화조직과 개발 조직의 젠더 전문가로 구성됨.

- 정부 부처, NGOs 및 학계 15개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1325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향을 밝히

9) Dutch National Action Plan on Resolution 1325(2008-2011): Women Peacemakers Program의 Isabelle Geuskens의 설명(2013.4.24) 참조

고 각 파트너의 역할, 임무, 전문성을 존중하고 국가행동계획 작성과 이행에 책임을 지기로 함

-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함.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의 공동서명자로서 모니터와 평가 결과에 대해 서명을 해야함.¹⁰⁾
- 시민사회는 종종 시민사회의 접근법을 유지하고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노력을 모니터하기 위해 시민사회만의 모임도 지속하고 있음. 국가행동계획 발표 1년후에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의 독립적인 평가를 의뢰했고 여기서 나온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음.

(2) 2차 국가행동계획(2012-2015)¹¹⁾

- 정부 부처,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등 29개 파트너가 각 파트너의 역할, 임무와 전문성을 존중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공동의 접근법을 토대로 공동의 책임성을 갖고 국가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합의.
-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파트너인 시민사회단체 상당수에게도 정부 예산이 배정됨.
- 시민사회 공식적으로 모니터와 평가과정에 참여.

3) 네팔

초기부터 정부, 유엔기구와 개발지원단체, 여성단체는 파트너십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1325호에 대한 전국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2007년부터 평화재건부는 유엔 기구와 여성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관료, 안보부문, 제헌의회 의원, 정당과 시민사회와 대화를 시작하는 등 1325호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9년 고위운영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이행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고위운영위원회 구성원 25명 중 10명이 시민사회 대표들이었다. 2010년부터 정부, 여성단체, 평화지원작업그룹(개발지원단체와 유엔조직으로 구성된 콘소시엄)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타국의 경험과 네팔 내부의 요구를 수립하였다. 국가행동계획의 틀을 개발하는 전국 워크숍과 이를 다시 수정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지방차원에서도 국가행동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모임을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국가행동계획안을 가지고 사전비준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후 고위운영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침내 2010년 2월 네팔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여성단체들은 1325행동그룹을 조직해 대응활동을 하고 있다.¹²⁾

10)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국가행동계획의 모니터와 평가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하더라도 협의자격으로 참가한다.

11) Women: Powerful Agents for Peace and Security Dutch National Action Plan (2012-2015)

12)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UN SCR 1325 & 1820 National Action Plan/Nepal, Glimpses of the Process Adopted*, Feb.2011.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54-55쪽 재인용

III. 한국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참여

1. 여성참여에 대한 접근법¹³⁾

- 분쟁예방과 평화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란 무엇인가?¹⁴⁾

- 규범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개입은 근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고 그 자체가 목표이다.
- 도구적 관점에서 여성은 특별한 경험과 가치 있는 관점을 가진 인구의 절반으로 여성의 참여는 어떤 과정이 성공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개혁의 한도 결정: 여성의 평화과정 참여는 분쟁 이후 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와 사회문화적 개혁을 위한 한도(parameters)를 정하는데 중요하다. 여성이 이 한도를 정하는데 기여하고 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때 남성들만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에 비해 평화협정의 범위, 평화협정의 주인의식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 포괄성(inclusiveness)과 주인의식(ownership): 더 많은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더 큰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포괄적인 과정은 젠더 이슈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속되도록 한다.
- 권한이 강화된 대표성(empowered representation)
 -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은 중요하다. 조직체 구성원의 1/4 또는 1/3이 여성이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 참여의 의미가 있다.
 - 여성은 단일한 그룹이 아니다. 어떤 여성이 참여하는가와 그 여성들이 지원하는 이해가 무엇인지 물어야만 한다. 참여는 엘리트 여성 뿐 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을 위한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통합되는 것이 효과적인 참여이다.
 - 여성 참여는 단지 여성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 증가는 단지 대표성만이 아니라 의미 있고 실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참가만으로서 여성의 영향력이나 실제적인 역할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성의 참가는 과정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반해야 하며 이 과정과 결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수적인 증가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참여로써 고려할 수 있다.
 - 얼마나 실제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이 권력구조와 부의 분배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사회개발우선성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어떤 차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13) 정경란, “평화통일외교영역에서 여성 참여-국제적 논의와 국내적 실천방안”, 평화통일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토론회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5-7쪽 2012

14) Initiative on Quiet diplomacy, SCR 1325 and Women's Participation: Operational Guideline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Processes, 2010; Kavitha Suthanthiraraj and Cristine Ayo,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How Women Worldwide are Making and Building Peace,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ugust 2010) 참조

○ 실제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에 기여.

여성의 참여가 실제적 평등을 위해 필요하다. 실제적 평등은 사실상 평등(de facto or actual equality, equality in fact) 또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평등의 성취는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등한 결과를 성취하는 데 가능한 환경을 포함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¹⁵⁾

○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 여성은 평화과정의 참여를 통해 분쟁의 희생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로서 전환할 수 있다.

○ 과정과 결과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가 결과를 결정한다. 평화과정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분쟁 이후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 여성의 참여는

- 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comparative practices), 여성의 인권(human rights)을 보호해야 하며, 협치(good governance)를 위해 필요하다.

○ 여성 참여를 위한 일반원칙

- 여성의 개입이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고 대화, 중재, 협상, 정책 입법 프로그램의 이행과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성이 공동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정책 조치, 협의절차, 대화, 다른 개입은 그룹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해야만 한다.
- 신뢰형성조치(confidence building)는 긴장의 완화와 대화와 협의회전에 신뢰를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
- 지식과 기술: 대화, 중재, 평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참여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다른 정당, 정부, 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확신을 줄 수 있고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갖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2. 한국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의미

-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 유엔 여성(UN Women)의 집행이사국, 유엔 평화유지분담금 상위 10위국, 1325호를 지지하는 그룹(Friends of 1325)의 회원국,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소속 해외원조 공여국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한국 여성 뿐 만 아니라 한국이 파병한 국가, 개발원조 수원국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UN Women. Do our Laws Promote Gender Equality? Handbook for CEDAW Legal Reviews. 2012 3rd Edition

○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¹⁶⁾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평화·통일·외교분야에서 성인지적 접근법을 통합하고, 관련 분야 정책결정과정과 분쟁예방·해결·관리와 평화과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성폭력과 분쟁 예방을 촉진하며, 남북 분단하의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 여성들의 요구가 국가행동계획에 수용될 수 있게 하고 여성들이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와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 국가행동계획이 한반도 분쟁예방, 분쟁 해결,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도력을 강화하며, 평화와 통일과정을 젠더화하는 여성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평화협정과 안보개혁 의제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함으로써 평화문화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비전(people's vision of peace)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국가행동계획이 남북 갈등 상황 속에서 여성과 여아의 안보를 보증하고 남북 분쟁 예방,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노력에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돕는데 정부가 헌신하고 책임성을 갖게 할 것이다.
- 국가행동계획이 과병지역,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여성들이 평화구축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향유하고 분쟁과 분쟁이후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 정당하고 젠더감수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국가행동계획이 평화·외교·통일 분야에 실질적인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 국가행동계획이 희생자인 여성의 상황을 각각의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화의 주체이며 구축자로서 여성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3. 여성참여의 방법

1)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국가행동계획이 당신의 손안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활동가, 섬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을 넘어서, 평화, 여성, 인권과 관련한 사회운동을 가로질러서, 정부와 시민사회조직 사이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앉아서 쓰고 확인하고 종합하고 로비를 통해 국가행동계획을 만들었습니다.”

Miriam Coronel Ferrer, Member, Government Negotiating Panel for Talks with the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Founding Trustee, Sulong CARHRIHL

16) 일부 내용은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mplementing the UNSCRs 1325 and 1820, <http://www.sulongnetwork.ph/new/resource/philippine-nap-women-peace-and-security>, draft as June 8, 2010 (검색일: 2013.5.4)을 참조.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여성,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여성과 시민을 위한 1325호 교육을 하며, 1325호 이행을 모니터하며, 여론 조성 작업을 하며, 정부·의회·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모색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1325호 네트워크 발족 (2013.1.18). 참가단체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을 지원하는사람들,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평화외교포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이다.
- 여성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확대 추진 필요.

2) 주제별 접근

- 1325호를 비롯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들이 담고 있는 주제를 한국 국가행동계획에 포함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 평화유지, 분쟁예방, 보호, 참여, 평화과정, 성폭력,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재건과 평화구축, 인도주의적 지원과 강제이주, 군축 등의 주제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국가행동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¹⁷⁾

* 다음과 같은 주제나 이슈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예시)

-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해 해외 파병활동의 역할과 임무, 여성 참여 등
- 북한 및 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 정신대문제
- 기지촌 여성
- 해외파병지역에 사는 여성의 인권
- 탈북여성
- 평화국방외교통일 분야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및 젠더문제 통합
- 남북교류협력- 정치, 군사,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에서 여성 참여
- 6자회담 및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여성 참여와 젠더 문제 통합
- 해외파병군인 및 인도지원 관련자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연계 가능성
- 해외파병지역과 ODA 수원국에서 성폭력 문제
- 재건 및 평화구축 지역에서 해외파병군인 및 인도지원 관련자의 활동
- ODA와 남북협력기금이 수원국과 북한지역의 여성들에게 주는 혜택
- 한반도평화체제 형성과 평화군축문제

17) 이 글 II.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주제를 참고할 것.

3) 민관협력

-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평화·외교·통일분야에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참여는 바람직한 민관협력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 바람직한 민관협력(협치, good governance)의 기본 원칙은 평화외교통일분야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동등하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더 많은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더 큰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포괄적인 과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속되도록 한다. 지배구조(governing institution)가 남녀에게 비슷한 조건과 동등한 기회(comparable conditions and equal opportunities)를 제공해야 하며 공식과정에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해야만 한다.
- 1325호 국가행동계획 논의 전에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부재하였다.
- <1325호 네트워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준비과정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왔다.
- 외교부는 2013년 4월 10일 국회토론회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계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1325호 실무그룹(Working group)' 구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 1325호네트워크는 민관협의체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을 제안하고 평화·통일·외교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¹⁸⁾

기획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준비과정에서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의체이다.

- 제안 이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25호 실무그룹'은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재검토 및 수정 보완하기 위한 실무수준의 조직이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실무수준의 협의체를 넘어 평화·외교·통일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즉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전체적인 정책방향,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수립 까지를 협의할 수 있는 상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1325호 네트워크,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1325호 네트워크> 제안서, 2013. 5.12

다. 시민사회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참여는 1325호 이행의 주체로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 기능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총괄적인 방향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그룹이 작성한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검토

○ 운영

-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실무그룹에서 준비한 국가행동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모임을 개최
- 기획단 운영일정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 기획단을 구성하고 (5월말-6월초),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을 작성

○ 구성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이행과 관련한 정부 부처 담당자와 여성단체/시민사회단체, 학계 대표로 구성
- 정부부처: 외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
- 평화·통일·외교·여성인권 분야의 여성단체/시민단체 및 학계 대표

○ 예산

- 기획단과 이 기획단을 지원할 실무그룹에 필요한 예산과 실무지원은 주무부처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정부가 1325 국가행동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거친 상황에서 다시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두 분의 발표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는 정부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현숙 대표님이 발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즉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자는 요지이다. 정부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성실성의 부재이기 보다는 역사인식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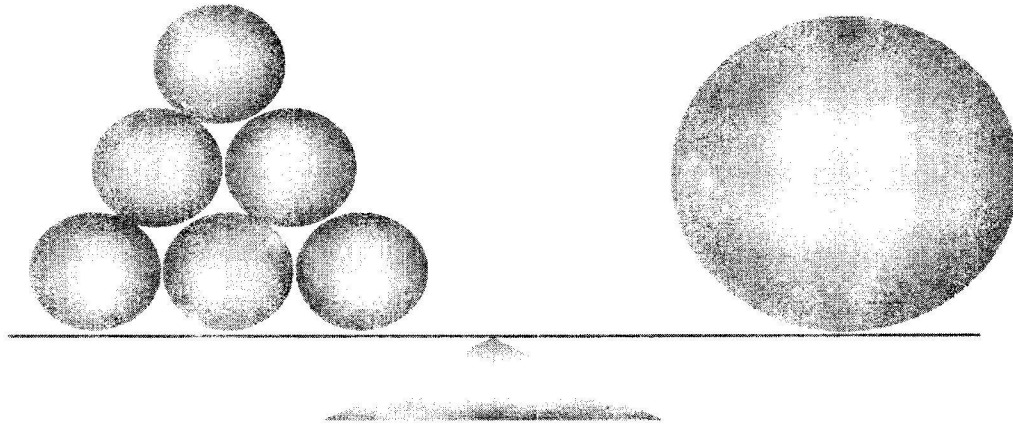
1325 국가행동계획이 식민지와 전쟁, 남북분단, 전쟁위협, 일상화, 외국군대 주둔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 던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평화는 여타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은 한반도 내외에 상존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우리의 생존의 조건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그 정부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첫 번째 문제의 내용의 부실함은 두 번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여성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 속에서 만들어졌는가의 문제이다. 소통과 교감, 인식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단지 1325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바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보불감증과 평화불감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안보불감증, 위기의식의 부재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인 평화정착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은 바로 국민들의 평화의식을 향상시키고 평화유지 및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해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담아내야 한다. 여성 시민사회간의 소통과 교감과 더불어 민관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현 1325 국가행동계획수립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표가 지적하였듯이 여성시민사회간의 네트워크의 강화와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325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여성시민사회의 네트워크는 어떠한가?를 자문할 수밖에 없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민관협력? 한 번 만들어보자는 초보단계. 둘 다 정부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여성시민사회간의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균형을 이룰 때에야 비로서 1325 국가행동계획은 한반도의 평화유지 및 인간안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은 단지 행동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외교분야에서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시민사회도 정전협정 60주년인 올해 보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외교, 안보, 통일정책 실패로 인한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나 변화를 만들어 내는 평화조성자, 평화구축자로서 자신들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이대훈 (성공회대학 평화학 연구교수,
유엔 아시아태평양 여성안보평화 자문그룹 위원)

1.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 실효성이 있고 참여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 및 관련 집단과의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관련된 국제법적 국내법적 자원 및 기타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지혜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기구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 광범위한 참가와 논의, 그리고 그 이전에 정보 공유와 사회적 1차 학습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정부 일부 부처의 편의적 주도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기구의 설립이 초기의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이 기구는 계획 수립 이후, 모니터링 기구로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기구를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이 기구에는 현 정부에서 1325호 결의와 관련되어 의견을 물은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동시에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여성, 여성과 안보, 및 평화 관련단체들과 독립적 전문가들도 초청되어야 한다.
- 아울러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기구 또는 유사한 모임체에서, 1325호 결의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을 쉽게 널리 알리는 홍보자료를 먼저 내야 하며, 이를 널리 회람한 후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시민사회, 여성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 이러한 일차 의견 수렴에 기초하여 계획안의 기초가 되는 문제영역, 관심영역, 필요한 조치, 권장 조치, 가용 예산 등에 대한 일차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 또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근거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국가행동계획에서 한국이 외국과 관련된 사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언급한다면 이는 대단히 무책임하거나 고루한 외교공세로 평가될 것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제관계를 위해서 외국의 영향 아래 발생한 한국 여성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이 해외의 전쟁 및 분쟁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여성평화안보 문제도 공평하고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좋은 계획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 상투적인 예방조치는 애매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의 평화와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새로운 교육내용과 정책, 그리고 기존의 인권제도에

기초한 예방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이 분야가 한국에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홍보-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교육의 기획과 평가, 구체적 분쟁/전쟁 시 여성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또한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방통일외교 정책이 여성지위와 인권, 젠더관계, 젠더관련 교육과 가치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예비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재정적 전문적 역량이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 성별영향이 있을 경우 본 계획의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와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심의와 관련된 제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 평화·안보분야 의사결정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및 양성평등 도모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설정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비율 증대의 구체적 수치와 시간표, 재정적 뒷받침, 시민사회와의 구체적 협의, 협력 계획 등을 국가행동계획에 담아야 한다.
- 정부 내 전문 기구 구성에 관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와 코이카 등에 분쟁지역 여성평화안보 협력 전문부서의 설립, 민관 공동으로 여성안보평화 정책연구기관의 설립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 분야에서, 분쟁지역의 여성권리 침해 회복 활동에는 베트남의 한국군 참전지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참전당시 여성 피해자들과 관련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호와 회복조치가 연구되어서 포함되어야 한다. 코이카의 베트남 협력사업에 이러한 구호 회복 사업이 대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분쟁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그런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기업 및 한국 관광객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쟁지역의 유흥향락산업이 현지 여성의 지위와 인권, 그리고 분쟁에 미치는 영향 조사, 평가, 대책 수립, 보호, 구호, 회복 조치도 계획의 중요한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북한 군사갈등, 북한-미국, 북한-일본 갈등,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영토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 평가, 대책, 보호, 구호, 회복 조치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안보리 1325결의와 여성차별철폐협약

- 1325 결의안은 평화·안보 영역에서 여성의 인권존중과 인권보호, 여성의 역할을 중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화·안보 관련해서 연관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연관시키려는 노력에서도 '전쟁폭력 피해자로서 여성 보호'의 접근이 우월했는데, 반면 1325 결의안은 여성의 적극적 역할의 가능성과 외교안보군사 정책의 폭넓은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라는 커다란, 그리고 잠재적으로 큰 과급력을 가진 가능성을 열고 있다.
- 1325 결의안은 1970년대 이후 국가중심적인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서려는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제시들, 특히 인간안보적 접근과 여성의 역할을 결합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어떤

문제가 안보 문제인지 안보 규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과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어떤 문제를 안보(분쟁) 문제로 규정하고 안보적(군사적) 접근을 결정하는 것은 안보와 인권의 핵심적인 영역 이면서도, 비민주적이고, 인권 예외적이고, 젠더화된 불평등한 권력과정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상황, 분쟁 이후, 분쟁의 지속성, 젠더화된 분쟁

- 여성-안보-평화 주제에서 분쟁 전후, 안보 상황, 평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할 것인가가 핵심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지점들은, (1) 비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의 발전에 따라 안보는 안보섹터-남성에 의한 일방적 해석이기 때문에 안보상황 판단에 관한 사회적 민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2) 전통적으로 안보와 군사 과정은 전 과정에 극도로 젠더화되어 있고 여성배제적이라는 점, (3)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쟁과 폭력상황은 지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분쟁 전후를 엄밀히 구분하는 접근에는 취약성이 있으며, (4) 분쟁 이전의 상황과 분쟁 이후 상황에서 젠더관계와 분쟁/폭력의 지속성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5) 소위 '평화' 상황에서도 폭력의 준비와 정당화, 군사주의, 젠더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생산되며, (6) 이 과정에 군과 안보 관련 기관들이 깊게 관여한다는 점 등이 있다.
- 성인지적 관점은 외교, 안보, 군사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젠더화(단순한 여성참여 배제를 훨씬 넘어서는 구조화된 배제와 차별)되어 있다는 관찰과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외교안보군사통일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군 전시 성노예제의 문제, 베트남전 등 전시 민간인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 외국군 주둔에 따른 성폭력의 문제 등이 해당 국가 간 양자협정에 의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극심하게 침해되고 여성이 이차, 삼차로 배제되는 과정을 만들어낸 점을 교훈으로 삼아, 갈등예방과 평화구축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가 간 합의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수적이다.
- 두 접근과 관련되어 문화와 제도로써 '군사주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을 포함하는 분쟁 지역에서 '현저한 무력 갈등' 이전 상황과 갈등 그 자체, 그리고 갈등 이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생산하는 문화이자 제도이기 때문이다.
- 군사주의의 일상적 형태는 폭력, 전쟁, 힘, 강함, 보호, 영웅, 우리 집단의 우월성, 상대 집단의 제거, 폭력적 수단의 정당화, 역사적 범죄의 은폐 등에 대한 군사적 가치의 태도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 문화적 정당화이다. 때문에 두 접근과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는 평화교육, 여성인권 에 기반한 평화교육, 성인지적 관점의 평화교육이 필수적 과정으로 포함되어 한다.
- 문화로서의 군사주의, 이념으로서의 안보주의를 염두에 둘 때 여성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하는 장애 요인의 파악과 정식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325조치와 달리 이 주제에 관련된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를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큰 잠재력을 가진다. 그 조항은 우선 실제적 평등의 실현을 의무화한 2조와 그리고 그 적극적 의무로서 5조이다.

제5조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지금까지 대체로 이러한 권리조항/국가의 의무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관련되어 추진되었으나, 안보 영역은 예외로 취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위 두 접근은 이제 안보 영역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 특히 장애가 되는 사회적, 문화적 행동 양식의 수정을 인권으로서, 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요인의 파악과 정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아동과 군사: 국제아동권조약은 위 두 접근과 무관해 보이지만 아동(청소년) 역시 전쟁과 폭력 및 젠더불평등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위 두 접근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인도법과 아동권 조약은 아동의 교육권에서 군사훈련을 간접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으며, '아동병사' 금지 선택의정서에서 비전투행위일지라고 아동의 동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미성년에 대한 군사-안보 교육이 심각하게 젠더화된 교육이자, 나아가 반인권적인 주입식 교육의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위 두 접근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한국에서 안보-군대와 여성

- 최근 여성-안보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해 한국의 안보섹터와 군이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반면 한국 사회는 '안보' 논리의 지배력이 정치적으로나 일상적으로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권이나 기타 국제규범으로 이 잘못된 지배력을 제약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다른 규범에 의해서 견제되지 않는 배타적 '안보적' 접근의 한계와 제약을 인권기준에 의해 엄밀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도 직접적으로 '안보' 논리의 전횡에 대한 규제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
- 군과 군 관련 기관이 민간사회와 정치에 깊게 침투해 있고 하나의 정부기관 이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장된 군사'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안보/평화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 권리, 역할을 모색하는데 출발점이 된다. 한국에서 '확장된 군사'는, 경제 영역에서 국방비의 비중과 영향, 군수산업의 비중과 영향, 또 경제논리와 연관된 해외 파병과 민간군사기업의 등장, 국방비에 대한 의회와 시민사회의 통제된 접근과 제한된 감시, 시민사회에 젠더화된 방식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 외곽조직, 아동의 교육에 젠더화된 방식으로 침투하는 군의 민간교육과 젠더화된 전쟁교육, 젠더화된 언어문화 서열문화 조직문화 등을 규정하는 군사문화와 그 바탕으로 남성 군사훈련, 군사정책과 행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완전한 배제와 그 과정에서 젠더화된 공격 문화 등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안보 영역에서 여성인권 불가침의 기준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군사주의의 확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안보 영역에서 여성인권 불가침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군사교육, 안보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아동권 관점, 국제인도법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
- 성인지적 관점의 평화교육이 교육권 및 시민권으로서 그리고 평화-인권(평화권)의 하나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의 평화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젠더화된 한국사회와 안보, 여성의 참여

김엘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는 초국가적 시민사회운동으로 이룬 쾌거이면서, “유엔에서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던” 외교 안보 분야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매우 뜻깊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¹⁹⁾ 무력분쟁이 남성과는 다른 차원으로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은 평화와 안보 의제에 젠더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을 평화 형성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인간안보라는 맥에서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도 1325가 가지는 성취이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25는 남성(국가)중심적인 안보패러다임을 다르게 전환하지 못한 아쉬운 한계도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1325는 현실적 국제관계에서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갖춘, 최소한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인식해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경란 공동대표의 발제문은 이러한 현실을 일깨운다. 평화과정에 여성이 필연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와 의의를 짚고 한국사회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젠더비율이나 지향하는 가치, 행동방향에서 있어서 남성성이 강한 분야에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참여가 곧 여성의 주체성, 행위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력분쟁의 한 가운데,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여성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왔다. 좀 더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성차를 지속시키면서 여성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참여/동원해왔다는 점이다. 1325의 보호라는 항목도 남성중심적인 안보패러다임에서 나올 수 있는 ‘여성’과 결별하지 못한 채 약자, 피보호자라는 위치를 애매하게 걸치고 있다.

남성중심적인 관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면서도 남성중심적인 안보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외교고시 합격자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고 해서²¹⁾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성군인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력분쟁을 해소하는 평화과정에 여성의 역할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평화운동에 여성들의 참여 수가 많다고 해서 평화실현이 좀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19) 1325호가 유엔의제가 되어 결의문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시아 코번, 김엘리 옮김(2009), 『여성, 총 앞에 서다』, 서울: 참인, 272-295쪽.

20) 1325가 발표된 후 분쟁지역에서 겪는 여성들의 상황과 경험을 현장 조사하여 발표한 글들이 후속작업으로 이어졌다.

21) 국회의원선거위원회의 자료(2012)에 따르면, 2011년 외교고시 5급 공채 여성합격률은 55.2%이고, 남성합격률은 44.8%이다.

그래서 NGOs가 좀 더 강조해야할 것은 여성의 '참여'가 의미있게 지속되고, 임파워되어 남성중심성을 변화시키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화된 안보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에 정부가 시행한 성주류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현숙 상임이사가 강조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여성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성만의 병역의무가 시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안보'의 의미를 어떻게 전환할지에 관한 매우 논쟁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요청된다.

평화운동에서 직면하는 딜레마 중의 하나는, 개인적인 것은 국제적인 것과 연결돼 있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는가하는 점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지춘 여성의 삶이 국가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국가안보가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만들고 있는지를 좀 더 예리하게 혹은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한다. 사적으로 간주되는 여성의 활동과 남녀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둔다면,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참여하여도 '동등함'은 수사적이거나, 일부 여성들의 경력으로 그치기 쉽다. 따라서 누구와 어떻게 공동 협력할 틀을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도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는 지혜가 요한다.

1325가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지역의 맥락에서 구체화해야하는데, 이현숙 상임이사의 글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 국가행동계획은 분단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탈분단과 평화구축을 위해서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용인하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분명히 제시해야한다는 점을, 발제문은 강조한다. 그동안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추진돼 왔던 북한과 남한의 다양한 여성교류가 동북아 평화를 형성하는 파위가 되기 위해 여성단체들은 노력해왔다. 여성들의 남북여성교류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연대활동을 통한 경험과 성과를 잘 녹여내는 것만으로 국가행동계획의 방향과 내용은 잡힐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여성들이 갖춘 역량은 크다.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하는 시급한 사안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좀 더 다각적이면서 길게 보는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기지촌여성노인 지원필요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한국에서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제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발생되어진 기지촌 여성노인들을 위한 지원방안대책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전쟁이 거치면서 미군이 주둔함으로 정부의 계획 하에 장려된 기지촌 사업은 이미 여러 매체 ["국가가 관리하던 기지촌 여성들, 이제와 방조하나?" (여성신문, 2012.10.26)/ 기지촌 할머니의 애환과 절규... "짐작취급" (MBC 뉴스데스크 8시뉴스 현장르포, 2012.12.14)/ "기지촌 여성문제는 국가의 책임" (여성신문, 2011.10.20)/ "기지촌 여성문제 소송제기와 입법운동 필요" (여성신문 2011.12.30)/ "국가가 포주였다" (한겨레 21, 695호 pp.18-29, 2008.01.29)/ '기지촌 할머니, 누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6.10.21)/ "기지촌 할머니들 어디로?" (KBS 2 TV 시사투나잇, 2006.05.04)/ '기지촌 역사'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3.02.09)]를 통해서 보도 되었듯이, 기지촌 성산업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지촌은 우리의 무능력과 비굴함과 책임전가로 힘없고 가난한 소녀들이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당하는 현장이기도 하였다. 이제라도 정부가 과거 기지촌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노후대책과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1961년에 여성의 인권보호와 사회정화차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반면에 정반대의 모순되는 '관광사업진흥법'을 같은 해에 제정함으로써 104곳에 윤락행위의 단속을 면제해주는 적선지구로 지정하기도 했다.²²⁾ 한편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성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달러를 벌어드리는 산업역군으로 미화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게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고 비인간화를 장려하였다.

기지촌 여성들은 '민간외교관' 혹은 '달러벌이 산업역군' 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미군상대여성'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무된 사실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파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화획득은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였으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소위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되었고, 실제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의 외화획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2) 한일합동 기지촌 워크샵.(2011.12.16), 이나영, "기지촌 역사적 구성 과정과 여성운동" 11.

우리가 저거하면 회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좀 병 없이 건강하게 해 갖고 돈을 굶어내라는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회의 할 때 (맞아, 외화를 많이 벌라고)²³⁾

단지 외화획득뿐만이 아니다. 닉슨 독트린 정책(1969년)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감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당시 정부는 기지촌정화위원회를 공식제정(1971.12.22)하고 1972년 기지촌정화위원회 종합프로그램의 예산, 11억 5천만 원²⁴⁾을 승인하였다. 이로 인한 기지촌정화운동의 중심내용은 기지촌여성들의 성병관리를 통한 ‘정화’였다. 성병검진사업은 당시 기지촌여성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출근 도장 찍듯 성병 유무를 확인받고, ‘보건증’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²⁵⁾ 이렇듯 기지촌여성들은 성병관리를 철저히 받아야 했고 백인과 흑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외교관’이 되어야 했다.

미군 접촉하려면 해야 되. 일주일에 두 번씩..... 그때는 눈만 뚫다 하면 (성병)검진이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니까....²⁶⁾

이렇게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철저한 관리의 대상이 되었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병사들에게 안전한 휴식과 섹스를 제공하길 원했고, 한국정부는 주한 미군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달러와 안보의 약속이 필요했다. 어떤 의미에서 기지촌여성들은 이러한 국가의 이해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화적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때 ‘산업역군’으로서 또 ‘민간외교관’으로서 칭송을 받던 우리 할머니들은 기지촌의 쪽방에서 만성질병과 빈곤으로 노년을 버텨내고 있다. 주거불안 및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 햇살사회복지회가 2008년 경기도기지촌여성노인 실태조사(후원: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 지도: 신은주 교수 김현희 박사/149 설문지중 133개의 설문지 분석)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에서 기지촌 할머니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복수 응답) 주거지원요청(103.1%)이 첫 번째요 그 다음은 생활비 지원(70.2%)이었다.²⁷⁾

기지촌 여성노인들은 현재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아니라서 ‘성매매특별법’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당시 지역경제의 60%이상을 부양한²⁸⁾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여성노인들이 젊었을 당시, 어느 정부 고위관리는 “요담에 나이 먹고 일을 못할 때에는 9평 아파트라도 지어 살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수차례 했지만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햇살사회복지회 5주년 행사(2007.06.05)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정치외교학/ 1973년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쪽 위원장)는 “당시 미국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관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23) 2007년 사)햇살사회복지회 경기도여성발전기금 프로젝트 사업보고서,((2007.12.10), 49.

24) 캐서린 H.S. 문, 「동맹국의 섹스」,(삼인, 2002), 121.

25)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정책토론회,<사)햇살사회복지회, 2008>,55.

26) 위의 책, 55.

27)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84.

28) 캐서린 H.S. 문, 위의 책, 56-76.

평택, 의정부 등 미군기지 근처 클럽을 답사했다. 대통령이 특별자금으로 직접 의정부에 기지촌 평화 사업비용으로 1억 원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우리 안정리 기지촌 여성노인들 앞에서 증언 한 바 있다.²⁹⁾

본인은 지난 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기지촌 문제에 관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었다. 기지촌이란 공간이 한미 동맹 속에서 국가의 개입 하에 형성된 만큼 기지촌여성노인들의 노후대책 및 주거대책에 대하여 간절한 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평택 안정리에서 오래 생활하신 여성노인 두 분도 마음을 같이 하며 동행하였다. 이제라도 기지촌 여성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 한복판에서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소재로 한 <일곱집매 (2013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기상 수상)>연극이 두어달 공연되고 있다. (아르코예술극장: 4.24~4.28/ 연주소극장: 5.1~6.23) 그리고 평택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이 배우가 되어 출연하는 <숙자 이야기(7월 3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연극이 서울변방연극제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시간을 내서라도 관람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몸과 인생 전체를 희생하고, 이제는 상처뿐인 몸과 마음만 남겨진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들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이다.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 현대사의 그늘에서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기지촌 여성노인들에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할 책임이 있다.

약 4년 동안 준비모임을 하며 작년 8월말에 출범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우선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난으로 등 떠밀려 기지촌으로 흘러 들어온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과 지자체에(동두천, 의정부, 과주, 평택) 조례제정 운동도 펼치기로 하여다. 작년 연말에 국회 법제와 복지여성법제실에서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검토하였으며, 올해 초 1월 15일에 우리(햇살사회복지회) 할머니들을 방문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유엔 안보리 1325호 행동계획에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의 카테고리에 기지촌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기지촌 여성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대한 실행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거역 할 수 없는 ‘포주’의 이름으로 ‘기지촌’을 통하여 이 여성들,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편으로는 강요했던 정부는 이제 그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때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성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며 ‘애국자’로 명명되었던 그녀들, 기지촌 할머니들이 지금은 이름 없는 주변인으로 이 땅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기지촌 여성노인들을 어루만지고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9)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주거대책, 왜 필요한가? <(사) 햇살사회복지회, 2009>, 30-3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안전보장이사회
2000년 10월31일

결의문 제1325호(2000)

2000년 10월 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4213차 회의에서 본 결의문을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 관련 성명과 더불어 1999년 8월 25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 1261호(1999년), 1999년 9월 17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 1265호(1999년) 및 2000년 4월 20일자 1296호(2000년), 2000년 8월 11일자 1314호(2000년)를 상기하면서

또한 2000년 3월8일 여성 인권 및 국제 평화를 위한 유엔의 날 행사(United Nations Day for Women's Rights and International Peace(국제 여성의 날))에서 언론에 발표한 의장 성명(SC/6816)을 상기하면서

또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에서 정한 이행 조항뿐만 아니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性)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23차 특별 회기 중,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결과 문건들을 상기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유엔 헌장에 준거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유엔 안보리의 주요한 책임임을 유념하면서

무력분쟁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의 대다수가 국내외 난민을 포함한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 상당수이며 전투대원 및 무장 대원들이 점차 이들을 희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또한 이로 인해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촉진하려는 모든 노력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분쟁 기간 및 분쟁 종결 후에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제적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지뢰 제거와 지뢰 인식(대중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 유지 활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가 긴박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 점에서 빈트후크 선언(Windhoek Declaration)과 다각적 평화지원 작전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에 대한 나미비아 행동 강령(Namibia Plan of Action on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n Multidimensional Peace Support Operations)(S/2000/693)을 주목하면서

또한 2000년 3월 8일 대(對) 언론 의장성명에서 수록한 분쟁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동 보호, 이들의 특별 요구사항 및 인권을 위해 일하는 모든 평화유지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에 대한 권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받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보완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급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영향력에 대한 자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1. 국가, 지역 및 기관 차원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여성 대표의 증원과 분쟁 예방, 관리 및 해결 메커니즘을 회원국이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2. 분쟁해결 및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성 참여 증대를 요청한 전략적 행동 강령(A/49/587)을 사무총장이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을 대표하여 외교적 중재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 대표단과 사절로 더 많은 여성을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후보자 명단을 업데이트하여 추천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4. 여성들이 유엔 현장기반 작전(United Nations field-based operations)에서, 특히 군 감시단, 민간 경찰, 인권 및 구호 인력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이 모색할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
5. 평화 유지 작전에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기꺼이 표명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야전 작전에 성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을 유엔 사무총장이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6. 모든 평화 유지 및 평화구축 조치에 여성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자료와 더불어 여성의 보호와 이들의 권리 및 특히 여성 특유의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지침 및 자료를 유엔사무총장이 회원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자국의 군대와 민간 경찰 인력 배치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에이즈 바이러스 및 에이즈(HIV/AIDS)에 대한 교육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하는 민간 인력이 유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7. 적절한 기금과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유엔 여성 기금(United Nations Fund for Women)과 유엔 아동 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과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other relevant bodies)을 통해 수행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성인지적 교육 노력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지원과 기술 및 수송 지원을 증대할 것을 촉구한다.
8. 모든 관련 행위주체들이 평화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 (a) 송환 및 재정착 기간 동안 재화와 복구(reintegration) 및 분쟁 후(後) 재건을 위해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특별 요구사항
 - (b) 현지 지역 여성들의 평화 방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현지의 특정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조치 및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모든 메커니즘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
 - (c)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헌법, 선거 제도, 경찰 및 사법부와 연계되었을 때 이들의 인권이 반드시 보호받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9.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민간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적용 가능한 의무 조항들은 다음에 근거한다. 1994년의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s of 1949)과 1977년의 부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s thereto of 1977), 1951년의 난민 협약(Refugee Convention of 1951)과 1967년의 의정서(Protocol thereto of 1967), 1979년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f 1979)과 1999년의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of 1999), 1989년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89)과 2000년 5월 25일자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s thereto of 25 May 2000) 두 건이며 또한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이 국제 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련 조항을 유념할 것을 요청한다.
10.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성 관련 폭력, 특히 강간 및 또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그리고 무력 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1.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impunity)을 종식하고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소 책임을 모든 국가가 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들

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및 그 이외의 범죄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면(赦免) 조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범죄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함을 강조한다.

12.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난민촌과 정착시설의 설계문제를 포함하여, 이런 시설들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특성과 인도주의적인 면을 존중하고 또한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1998년 11월 19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 1208호(1998년)와 2000년 4월 19일자 결의 1296호(2000년)를 상기할 것을 요청한다.
13.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복구 계획에 관여하는 모든 인력들은 여성과 남성 전직 전투 대원들이 원하는 상이한 요구사항과 더불어 이들의 부양가족이 원하는 요구사항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14.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조치들이 채택될 경우에는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특별 요구사항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해당 조치들이 민간인들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감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는 적절한 인도적 면책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15. 안전보장이사회는 지역 및 국제 여성 단체의 자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성문제를 고려하고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임무임을 기꺼이 표명한다.
16.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받은 영향력과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와 분쟁 해결에 대한 성 관점(gender dimensions)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더 나아가서 수행한 해당 연구 결과를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이를 유엔 전체 회원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고할 때 적절한 경우라면 평화 유지 임무를 통한 성 주류화에 대한 진척상황과 더불어 여성 및 소녀들과 관련된 모든 다른 측면들도 포함시켜 줄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
18.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20호

안전보장이사회
2008년 6월 19일

결의 1820호(2008)

2008년 6월 1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5916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10월 31자(Security Council/PRSY/2001/31), 2002년 10월 31자(Security Council/PRST/2002/32), 2004년 10월 28일자(Security Council/PRST/2004/40), 2005년 10월 27일자(Security Council/PRST/2005/52), 2006년 11월 8일자(Security Council/PRST/2006/42), 2007년 3월 7일자(Security Council/PRST/2007/40)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를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라,

또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하에 국가들이 약속한 의무대로, 범죄 묵인 행위(impunity)를 종식하며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에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확실히 보호함으로써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 의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로 표명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 for Action)(A/52/231)의 노력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회기 중에서,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회원국가들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재촉해 위 협정의 내용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무력분쟁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의 대다수가 민간인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며, 또한 특히 공동체의 민간인들이나 특정 인종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지배하며, 공포를 조성하고,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전쟁전략의 일환으로서 여성과 아동들을 겨냥해 성폭력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저질러진 성폭력은 일부 경우 분쟁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안보리가 무력 분쟁 도중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모든 성폭력 및 기타 폭력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던 것을 상기하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조직적으로 확대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국제형사법정의 규정들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분쟁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는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과,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쟁이 끝난 뒤 공식 생활에 종사하는 여성의 능력과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폭력, 협박, 차별로 인해 분쟁 방지와 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또한 이것이 분쟁 후 평화구축을 포함한 장기적인 평화, 안보, 화합에 가져다 줄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며,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부처 간 협력 제안인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이 보여주듯이, 무력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현재 유엔 시스템 내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 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특히, 적절한 군 징계조치를 집행하고, 지휘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금지조치에 관한 부대 내 교육을 실시하며, 성폭력을 부채질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과거의 강간 및 기타 성폭력 행위를 참작하기위해 군 및 안보 병력을 면밀히 심사하며, 그리고 성폭력의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유엔 관리들과 분쟁당사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장려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특히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 공동체 여성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4.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은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및 집단 학살을 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분쟁 해결 과정의 사면 조항에서 성폭력 범죄를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또한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공평한 보호와 동등한 사법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따를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평화, 사법, 진실, 국가 재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범죄 목인 행위를 종식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5. 특정국 대상 조치나 제도를 만들거나 갱신할 때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이나 소녀들에게 강간 혹은 기타 성폭력을 저지른 무력분쟁 당사자들을 겨냥하여 등급별로 분류한 조치를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다.
6. 안전보장이사회, 유엔평화유지작전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와 관련 실무그룹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 및 기타 폭력을 보다 잘 예방하고, 인식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리가 명령한대로 유엔이 파견한 모든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구호 인력에게 제공할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7. 유엔 평화유지작전 중 일어나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쏟고 있는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인·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을 촉구해 적절한 사전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파견전과 파견 현장에서 실시하는 인지도 훈련과 그러한 사건에 군·경찰인력이 연루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된다.
8.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유엔 평화유지작전에 참여하는 자국 인력의 인식과 즉각적인 대응을 기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능한 경우 보다 많은 여성 평화유지군이나 경찰을 파견하는 것 포함)를 고안하도록 군인·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에게 장려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와 분쟁 도중 및 분쟁 이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한다.
9. 평화유지군의 법규에 맞추어, 관련 유엔 평화유지군이 보다 강화된 능력으로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길잡이와 전략을 개

발하며, 또한 안보리에 제출하는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여성과 소녀의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의 견해와 그에 따른 조언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0. 여성 및 여성단체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특히 유엔이 관리하는 대피소 및 난민 수용소 내부와 그 주변, 그리고 모든 무장 해제 및 사회재통합과정(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cess) 및 유엔이 도움을 제공하는 사법 및 안보분야 개혁(justice and security sector reform) 내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 기관에 요청한다.
11.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가 제공하는 분쟁 후 평화구축 전략 조언 중 적절한 곳에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또한 젠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 중 일부로서 국가별 배체에 여성의 효과적인 시민사회 참여와 자문을 보장하도록 하는 평화구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12.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와 안보유지, 분쟁 후 평화구축에 관련된 토론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며, 모든 참가자들을 장려해 여성이 보다 쉽게 정책결정 위치에 동등하고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사무총장과 그의 특사들에게 촉구한다.
13.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성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사법·의료체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과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 금융 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단체들에게 촉구한다.
14.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에 영향을 받은 여성과 소녀들의 혜택을 위한 정책, 활동 지원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관련 지역기구들에게 촉구한다.
15. 또한 안보리의 의제에서 다루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결의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2009년 6월 30일까지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 팀, 평화유지 작전 및 다른 유엔 인력을 포함한 모든 유엔 자원의 정보를 이용한다. 특히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이 광범위하며 체계적으로 일반인에게 가해졌던 상황에 대한 정보,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 및 경향 분석, 성폭력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제안, 성폭력 예방과 대응의 진척상황을 가늠하는 지표, 유엔의 현지 파트너들의 적절한 도움제공, 유엔 본부와 현지 활동 간의 조율을 통해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해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수집을 촉진하는 사무총장의 계획서, 그리고 특히 모든 성폭력 행위를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지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이 결의의 내용대로,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6.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88호

안전보장이사회
2009년 9월 30일

결의 제 1888호

2009년 9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6195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호(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2009년 7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362)를 환영하며, 그렇지만, 무력분쟁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아이들, 그 중에서도 소녀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 폭력 문제에 관해 진척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나왔듯이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체계적이며 더 널리 퍼지게 되기까지 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 회기 중에서,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재촉해 위 협정의 내용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무력분쟁 도중에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민간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를 여성과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점과, 거기에 더해 그들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impunity)를 종식함과 동시에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및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기타 지독한 범죄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며, 이런 점에서, 소수의 성폭력 범죄자들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한편으로는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국가 사법제도가 대단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무력분쟁 동안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과거의 학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슷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현재 겪고 있는 사회와 분쟁에서 회복중인사회가 범죄 목인 행위를 종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단언하며, 국가, 국제, '혼합' 형사 법원 및 법정과,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포함한 사법재통합 메커니즘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메커니즘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진실, 화해, 그리고 희생자의 인권까지도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a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 국제 형사법정의 규정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와 비국가 단체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 금지조항들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며,

민간과 군 지도자들이 지휘 책임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종식하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또한 그들이 성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쟁 도중에는 성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위험에 처한 인명을 보호하고 완벽한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과정과 중재노력의 초기부터, 특히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인도적 지원 접근과 인권 협정, 휴전과 정과 휴전 모니터링, 무장 해제, 동원 해제와 사회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안보분야 재건 활동(Security Sector Reform) 합의, 처벌과 배상, 분쟁 후 재건과 발전의 분야 등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과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식 교육을 받은 평화 중재자들 및 휴전 감시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유엔이 발기하는 평화회담에서 수석 혹은 지도적 평화 중재인들 중 여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평화정착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하며 완전한 참여를 증진하려면, 여성의 승진과 권위부여, 그리고 여성단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회원국, 위조국, 비정부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에게 촉구하면서,

민간, 군, 경찰 분야의 평화유지작전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을 환영하며, 무력분쟁을 겪은 여성들이 평화유지작전에 협조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받은 학대를 고발할 시 같은 여성들을 상대하는 것이 보다 안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여성 평화유지군의 존재가 현지 여성들이 국군 혹은 안보

병력에 참여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로인해 모든 사람-특히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안보분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결의 1325호(2000년)와 1820호(2008년)의 이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평화유지군을 위한 젠더 교육 지침을 개발하고, 또한 결의 1820호(2008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작전길잡이를 제작하는 등 평화유지작전의 민간, 군, 경찰 구성원들을 돕는 평화유지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의 노력을 환영하며,

2009년 7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362)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현 결의안은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 부록 '무력분쟁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소년병을 모집, 동원한 당사자 리스트'를 확장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무력분쟁 도중 아동살상 혹은 아동 강간이나 기타 성폭력에 참가한 무력분쟁 당사자들 리스트까지 포함시키도록 안보리가 2009년 8월 4일자 결의안 1882호(S/RES/1882)에서 내린 결정을 상기하며,

젠더문제에 관한 특별 보좌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무들인 결의 1325호의 이행 모니터링, 유엔 시스템 내부의 성주류화 진행,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한 부여 및 성평등 증진에 주목하며, 또한 유엔 시스템 내 이러한 분야들 간의 효과적인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표명하고,

관련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할 안보리의 가장 큰 책임을 재차 확인하며, 또한 무력분쟁이 일반인에게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성폭력 관련 포함)을 계속해서 다룰 의지를 되새기며,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 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3.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군 징계 조치를 집행하고 지휘책임 원칙을 지지하며, 민간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절대적인 금지조치에 관해 부대를 교육하며, 성폭력을 부채질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국군과 보안 병력 지원자들을 면밀히 심사해 성폭력을 포함한 국제 인도법,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관련되었던 이들을 탈락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4.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현존하는 유엔 조율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일하며, 특히 정부(군사법부 대표 포함) 및 무력분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본부와 지방지부 양쪽에서 무력분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동시에, 부처간 협력 제안인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통해 모든 관련 책임자들 간의 협력과 활동 조율을 증진한다.
5. 분쟁 중 성폭행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구성하는 조직들과 더불어 유엔 시스템 내 다른 관련 조직들을 촉구해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의 활동을 지원하며, 모든 관련 책임자들 사이의 협력, 정보공유, 조율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방지부들 간의 중복 활동을 피하며, 전 조직에 걸친 대응방식을 발전시킨다.
6.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며 생존자들에게는 사법 접근권을 갖게 하고, 재판과정 동안 권위를 존중 받고, 보호받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게 국제법에 따라 포괄적인 법률 및 사법 개혁에 지체 없이 착수하도록 각 국가에게 촉구한다.
7.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촉구해 민간인과 군 인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폭행 혐의범을 기소하도록 하며, 그리고 민간 및 군 지도자들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사용해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8. 무력 분쟁중 성폭력과 관련된 상황에 전문가를 급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국가 권력기관을 도와 법률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현지 정부의 동의하에 활동하는 유엔 파견 전문가들이 일한다. 그리고 유엔 시스템 내부에 현존하는 인적 자원과 자발적 기부를 활용하고, 거기에 더해 법률, 민간 및 군 사법 체계, 중재, 범죄 수사, 안보분야 개혁, 증인 보호, 공정한 재판의 기준, 언론매체와 대국민 접촉활동(Public Outreach) 분야의 유엔 전문지식을 활용하도록 권한다.
- (a) 국가 법률과 사법 관련 공무원들과 관련 정부의 민간 및 군 사법 체계의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죄 묵인 행위를 바로 잡는다. 여기에는 국가의 역량 강화와 사법 메커니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포함된다.

- (b) 국가가 내세운 대응책 중 결함을 찾아내고, 무력분쟁 중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적 접근방식(범죄에 대한 처벌 증가 희생자에 대한 빠른 대처 사법부 역량 강화 등을 포함)을 장려한다.
- (c)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내외적 노력과 자원을 조율하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 (d) 결의 1820호(2008년)에서 요청한 조치들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유엔 작전, 국가팀, 그리고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와 적절히 협조한다.

- 9. 국가, 관련 유엔 조직 및 시민사회를 장려하여 국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게 한다. 이를 통해 무력 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 및 법률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10. 무력분쟁 상황에서 목표를 새롭게 채택하거나 갱신할 때, 강간 혹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계된 규정 기준을 포함할 것을 고려할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또한 모든 평화유지 및 기타 관련 유엔 작전과 유엔 기구들 - 특히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 에 요청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제 위원회(위원회 내 모니터링 그룹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와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 11. 평화유지 관련 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갱신하는 결의안들이 성폭력 방지와 대응에 관한 조항과, 그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확실히 포함하도록 보장할 의지를 표명한다.
- 12. 유엔 평화유지작전 지령에 강간 및 다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결정한다. 여기에는 젠더문제자문관과 인권보호단체들 중 여성보호 자문관(Women's Protection advisers)들을 개별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여성보호자문관의 필요성과 숫자, 역할이 각 유엔 평화유지 작전을 구상할 때 체계적으로 평가되도록 보장한다.
- 13.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특히 시골 지역에서의 의료복지 접근성, 사회심리학적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경제 재통합 서비스 등을 증가시키도록 각 국가들에게 장려한다.
- 14.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의 관심사나 요구사항에 대해 현지 여성 및 여성 단체들과 토의모임을 갖고, 이를 이용해 무력분쟁 지역에서 정기적 현지 탐사를 보다 잘 활용할 의지를 표명한다.
- 15.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국가, 지역 지도자들을 장려해 공동체가 성폭력문제에 더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소외와 낙인 행위를 피할 수 있고, 그들의 사회 재통합을 도우며, 범죄 묵인 문화를 종식할 수 있다.

16.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 및 중재 과정에 여성참여를 증가시키도록 사무총장, 회원국, 지역 기구 수장들에게 촉구한다.
17. 유엔이 발제하는 모든 평화 협정 의제에 성폭력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며, 또한 평화 과정에 착수할 때부터 성폭력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 특히 휴전전, 인도적 구호 접근과 인권협정, 휴전과 휴전 모니터링, 무장해제와 사회재통합 및 안보분야개혁 조치, 군안보 병력의 정밀조사, 사법, 배상, 회복 개발 분야가 포함되도록 한다.
18. 사회 재구축에서 여성이 맡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며, 또한 포괄적인 성인지 접근방식을 활용해 분쟁 후 불안한 상황을 줄이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 역할을 재차 확인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제에서 거론된 나라의 모든 당사자들이 분쟁 후 전략에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이행하도록 평화구축위원회를 촉구한다.
19. 회원국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수의 군과 경찰 여성 인력을 유엔 평화작전에 파견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군과 경찰 인력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20. 파견 전 훈련과 신규 훈련에서 성폭력을 다룰 때 군과 경찰 인력을 위한 교육지침을 포함시킬 수 있게,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부대와 경찰 파견국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21. 유엔 평화유지작전 중 일어나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쏟아 붓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인과 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을 촉구해 적절한 사전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파견 전과 파견 현장에서 실시하는 인지도 훈련과, 그러한 사건에 군과 경찰인력이 연루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된다.
22. 각각의 유엔 기관들 내에서 체계적인 성주류화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사무총장이 모든 관련 유엔 조직을 지휘하도록 요청한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부처 내와 현지에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무력 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 각각의 법류 내에서 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3. 유엔 행동 연구소로부터 전략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와 긴급구호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에서 촉구하여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모든 관련 책임자들과 상의한 후 성폭력과 투장하기 위한 정부-유엔 포괄적 공동전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이 본부에 제출하는 관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정기적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게 한다.
24. 안보리에 제출되는 모든 관련 보고서에 최근의 사건 미 공격 패턴, 그리고 무력분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조기경보 지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보고가 포함될 것을 사무총장이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 긴급구호조정관,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여성폭력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그리고

유엔 활동 위원장들이 앞서 언급된 특별대표와 협력해 무력분쟁 중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에 대한 추가 브리핑과 문서들을 안보리에 제공하도록 그들을 장려한다.

25. 적절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성폭력으로부터 민간인-특히 여성과 아동들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개별 평화유지 작전에 관한 사무총장의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6.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들과 더불어 다른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되도록 빨리(3개월 안에) 무력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강간과 기타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시스템 내에 효과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이를 위해 유엔 시스템 내의 전문 지식과 국가 정부, 지역 기구, NGO의 자문 및 여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기여를 활용하여, 유엔 기구들이 고안한 대응책에서 나타나는 결점(차이)에 대해 시기 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구축한다.
27. 결의 1820호(2008년)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2010년 9월까지 결의 1820호와 본 결의문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a) 시기적절하며 윤리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자세한 조율과 전략적 계획서
 - (b) 상주조정시스템(Resident Coordination), 인도주의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유엔 국가 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 위에 언급된 특별대표와 전문가 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유엔 작전팀이 성폭력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최신정보
 - (c) 안보리 의제에 언급된 무력분쟁 상황 중, 강간 및 기타 성폭력 혐의가 있는 무력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
28. 유엔 혼성 기구(United Nations composite gender entity)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63/31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3/311)가 만든 과정을 고려하여, 특별대표의 지령(본문조항 4에서 언급)과 전문가 팀의 활동(본문조항 8에서 언급)을 2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적절한 때에 검토할 것을 결정한다.
29.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89호

안전보장이사회
2009년 10월 5일

결의 1889호

2009년 10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 6196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2000년), 1612(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 1888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며, 그리고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할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큰 책임을 유념하며,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 의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로 표명된 의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를 상기하며, 또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과 더불어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 회기결과 문서의 내용 중,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2009년 9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465)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현 결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행동계획서의 개발을 포함한 결의 1325호(2000년)를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또한 그러한 이행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장려하며,

분쟁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모든 평화 과정에 완전하며 동등하고 효과적인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복구중인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시 세우는 데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재차 확인하고, 또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쟁 후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중재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함, 평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중재팀 구성원과 고위 중재자 등 의사결정위치에 여성을 적절하게 임명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에 대한 극단적이거나 광적인 견해와 여성의 교육 접근성 부족 등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폭력, 협박, 안전 및 법률의 결여, 문화적 차별, 비난 때문에, 분쟁 방지와 해결에 여성이 참여하는 데 여전히 장애물과 과제가 많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또한 여성의 소외가 장기적인 평화, 안보, 화합의 성취를 늦추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특히 신체적 안전, 성과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그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들, 땅과 재산에 대한 권리, 직업 등과 더불어 특히 분쟁 후 평화구축과정에 조기참여를 비롯한 분쟁 후 계획과 의사 결정의 참여 등 분쟁이 끝난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인식하며,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쟁 예방,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의 여성 참여를 강화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분쟁 후 상황에서 공식 의사 결정과 경제 회복에 종사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은 대개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의 빠른 회복 요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필수적이며, 분쟁 후 평화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력 분쟁 도중과 분쟁 후 상황의 여성은 대개 피해자로만 인식되고 무력분쟁 상황을 다루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는 인식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며, 여성 보호뿐만이 아니라 평화구축의 여성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력 분쟁이 여성과 소녀들(피난민과 내부 추방민 여성 포함)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응, 그리고 여성의 보호와 특히 분쟁 후 평화 구축의 초반을 포함한 평화 과정에 있어 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조치가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증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젠더 문제 관련으로 배당된 유엔 개발 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의 다자기금(Multi Donor Trust Funds)의 사용용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한, 유엔 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개척한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유엔의 제안을 환영하며,

특히 현지과건인력을 포함한 유엔의 고위직에 보다 많은 여성을 임명하려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결의 1325호의 이행에 유엔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본격적인 행보로써 환영하며,

결의 1325호(2000)의 10주년 기념을 준비하여, 유엔 시스템 내부의 활동을 보다 눈에 띄게 하고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조정위원회(United Nations Steering Committee)의 설립을 환영하며,

결의 1325호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2009-2010년 동안 국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이벤트(장관 주최 이벤트 포함)를 조직하고, '여성과 평화와 안보'에 관한 노력을 새로이 다지고, 앞으로 결의 1325호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처방법을 확인하도록 관련자들을 장려하며,

1. 회원국들과 국제 지역 기구들에게 회복 과정의 초반부터 정치 및 경제 의사 결정의 여성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히 분쟁 해결, 분쟁 후 재건과 평화구축 등 평화 과정의 모든 절차에 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특히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을 증진하여 구호 관리와 재건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과, 여성 단체를 강화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려는 여성의 역량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다.
2.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보호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한 안보리의 요청을 반복한다.
3.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모든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범죄 목인 행위를 종식하며, 무력분쟁 도중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4. 사무총장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특별대표와 특사에 여성을 보다 많이 임명하며, 그리고 유엔의 정치, 평화구축, 평화유지 작전의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는 조치(적절한 훈련 포함)를 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 안보리에 제출하는 모든 국가의 보고서들이 무력분쟁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포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6. 관련 유엔 기구들이 회원국들과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신체적 안전과 의사결정 및 분쟁 후 재건의 참여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전 시스템적 대응을 발전시킨다.
7. 유엔 작전의 명령을 새롭게 만들거나 갱신할 때에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의지를 표명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적절할 경우 유엔 활동에 젠더 문제 자문관과 여성 보호 자문관을 지속적으로 임명하고, 유엔 국가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과 협력하여, 기술적인 지원과 보다 잘 조율된 노력을 통해 분쟁 후 여성과 소녀들의 회복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처하도록 한다.

8. 모든 분쟁 후 평화구축과 회복 과정 및 분야의 성주류화를 보장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한다.
9. 분쟁 후 요구사항 평가와 재건에 여성의 지위향상이 확실히 고려되었고 이후의 자금 지출과 프로그램 활동에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 원조국 및 시민사회에 촉구한다. 여기에는 투명한 분석을 개발하고 분쟁 후 과정 중 여성의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데 배당된 자금을 추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10. 분쟁 후 상황에 있는 회원국들을 격려해,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자세히 알아내고, 이러한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답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률 체계에 맞추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신체적 안전 보장과 나아진 사회경제적 조건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종류로는, 교육, 수입 활동, 특히 성 건강과 생식 권리,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접근성, 성인지적 법률 시행과 사법 접근성 및 공공 의사 결정의 모든 수준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1. 분쟁 후 의사 결정에 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하려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와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에 촉구한다.
12. 난민수용소와 정착촌의 성격이 민간 인도주의적이라는 점을 존중할 것과, 그러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장할 것과, 그들이 인도주의적 구호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13. 무장해제와 사회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력분쟁과 분쟁 단체에 연루된 여성들과 소녀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고려하며,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4.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와 평화구축지원국(Peacebuilding Support Office)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쟁 후 평화구축 과정의 일부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증진하기 위해 자원에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동원할 것과, 여성의 전적인 평화과정 참여를 격려할 것을 장려한다.
15. 평화구축 과정의 초반부터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유엔의 평화구축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총장의 의제에서 고려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6. 결의 1888호(2009)가 임명하도록 요청한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와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 간의 노력이 투명하고, 서로 협력하며, 적절하게 조율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7. 6개월 내에 사무총장이 결의 1325호의 이행을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지표들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 지표들은 관련 유엔 단체,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들과 회원국들의 2010년과 그 이후의 결의 1325호 이행에 관한 보고에 쓰일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8. 2007년 10월 24일 발표한 안보리 의장 성명(S/PRST/2007/40)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에 결의 1325호의 이행 진척상황에 대한 검토 내용과, 결의 1325호에 관한 정보를 안보리가 입수하고, 분석하며, 대응책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 유엔 체계, 회원국들, 시민사회간의 조율을 발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조언, 그리고 유엔 작전 중 여성의 참여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9. 평화구축과 분쟁 후 재건의 여성 참여 및 포함을 다루는 보고서를 앞으로 12개월 내에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보고서는 평화구축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a)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요구사항 분석
 - (b) 여성의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참여와 모든 분쟁 후 초기 재건과정, 자금 조달 및 회복 과정에 존재하는 도전 과제들
 - (c) 분쟁 후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계획하고 자금 지원을 하기위해 국가적 역량을 지원하는 조치들
 - (d) 분쟁 후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국내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들. 여기에는 여성의 전적이며 동등한 평화 구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경제 및 제도적 조치의 개발을 포함한다.
20.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960호

안전보장이사회
2010년 12월 16일

결의 1960호 (2010)

2010년 12월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6435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호(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 1888호(2009년), 1889호(2009년), 1894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2010년 11월 24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10/604)를 환영하며, 그렇지만 무력분쟁 도중 특히 여성과 아동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의 진척상황이 여전히 느리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또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왔듯이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점을 유념하며,

무력분쟁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무력분쟁 도중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비난을 되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변해 소름끼칠 정도로 야만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 및 비국가 단체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금지조항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의무를 충실히 따를 필요성을 되풀이하며,

군과 민간 지도자들이 지휘책임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 묵인 행위(impunity)와 싸우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쟁 도중에는 성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함과 동시에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및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기타 지독한 범죄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며, 이런 점에서, 소수의 성폭력 범죄자들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시선과 함께 주목하고, 한편으로는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국가의 사법제도가 대단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결의 1888호(2009년)에 따라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지원하는 전문가팀의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현지에서 일하는 유엔을 통해, 그리고 현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활동하는 전문가 팀을 무력 분쟁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특히 관련된 상황에 급히 파견해야 할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기여들에 감사하며,

자국민의, 그리고 관련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무력분쟁 도중에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민간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를 여성과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점과, 거기에 더해 그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력분쟁 동안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과거의 학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슷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겪고 있는 사회와 분쟁에서 회복중인 사회가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단언하며,

국가, 국제, '혼합'형사 법원 및 법정과,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포함한 사법 재통합 메커니즘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메커니즘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진실, 화해, 그리고 희생자의 인권까지도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es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 국제형사법정의 규정들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특히 시골 지역에서의 의료복지 접근성, 사회심리학적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경제 재통합 서비스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또한 그러한 서비스에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고,

성폭력 예방과 대응책 등 평화유지작전이 맡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야 할 충분한 능력과 구체적이고 적절한 안내지침에 관한 평화유지작전 특별위원회의 보고서(A/64/19)에 포함된 제안, 결혼, 조언을 환영하며, 모든 작전 구성원들과 모든 수준의 지휘 책임자들이 자신들이 수행중인 작전의 임무와 관련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고위 작전 책임자들이 민간인 보호(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의 예방 및 대응책을 포함)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이 민간인의 보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 개발의 진전을 환영하며,

공식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과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식교육을 받은 평화 중재자들 및 휴전 감시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유엔이 발기하는 평화회담에서 수석 혹은 지도적 평화 중재인들 중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더욱 분발해주길 격려하며,

민간, 군, 경찰 분야의 평화유지작전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러한 여성의 존재가 지역 공동체의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신고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0년 11월 24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10/604)를 고려하며, 그리고 현 결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 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그만 둘 것을 재차 요구한다.
3. 사무총장을 격려해 결의 1820호(2008년)와 1888호(2009)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안보리 의제가 다루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보고서에 부록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제재 위원회의 의사 진행과 일치하는 조치들의 포함, 유엔이 보다 많은 목적의식을 갖고 그런 당사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토대로서 이 리스트를 활용할 의지를 표명한다.
4. 사무총장의 보고서 A/64/742-S/2010/181의 문단 175, 176, 178.180과 일치하는 무력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기재 및 누락 기준을 현 결의에 따라, 그리고 현 결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 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노력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무력분쟁의 당사들에게 요청한다. 여기에는 특히 지휘 계통을 통해 성폭력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명령의 전달, 행동강령, 군 야전교범 및 기타 동등한 규범의 성폭력 금지조항 등을 포함한다.
6. 안보리 의제에 상정된 무력분쟁에서 강간 및 다른 성폭력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책임 이행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련 보고서와 브리핑을 통해 안보리에게 갱신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7. 무력분쟁 상황에서 목표 제제를 새로이 채택하거나 갱신할 때, 강간 혹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계된 규정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또한 모든 평화유지 및 기타 관련 유엔 활동과 유엔 기구들 특히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에 요청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제 위원회(위원회 내 모니터링 그룹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와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8.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일어나는 강간과, 결의 1888호(2009년)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상황들을 포함해서, 분쟁 관련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보고 조치를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이 조치들로 인해 일관성 있고 잘 조정된 현지 접근방식이 보장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결의 1612호(2005년)과 1882호(2009)에 따라 이행된 모니터링 및 보호 메커니즘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전적으로 존중함 동시에, 사무총장을 격려해 유엔관련자들, 국가 기관, 시민사회단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단체와 협력해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의 사례, 경향, 유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동급별로 분류된 조치들을 포함)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9.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와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 간의 노력이 투명하고, 서로 협력하며, 적절하게 조율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0. 젠더 문제 자문관들의 활동을 환영하며, 결의 1888호(2009년)의 내용을 따라, 평화유지작전에 보다 많은 여성 보호 자문관들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 결의의 도입문단 8에 따라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조치의 틀을 수립하는 데 그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11. 사무총장이 공들여 제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평화유지군 성폭력 근절 훈련 교재를 환영하며, 유엔 평화유지작전 준비와 파견을 위한 참고서로서 이 교재를 사용하도록 회원국들을 장려한다.
12.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무총장을 격려해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13. 명령을 인가하고 갱신할 때 성폭력을 충분히 고려하며, 기술적인 평가 활동에 젠더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의지를 표명한다.
14.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이루는 조직들과 더불어 유엔 체계의 다른 관련 부분들을 격려해, 앞에서 언급된 분쟁 중 성폭력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조율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방 지부들 간의 중복 활동을 피하며, 전 조직에 걸친 대응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책임자들 사이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15. 회원국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수의 군 경찰 여성 인력을 유엔 평화작전에 파견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군 경찰 인력에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16. 유엔 평화 유지군과 인도주의적 구호 인력이 저지르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과 경찰 인력의 파견 전 훈련과 신규 훈련에 쓰일 성폭력에 관한 길잡이를 계속해서 제공해줄 것과, 현장에서 성폭력에 대응하는 구체적 상황별 절차를 개발하도록 유엔 활동들을 지원하며, 군과 경찰 파견 국가들에게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어 파견 전과 신규 훈련에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군 경찰용 안내지침을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7. 결의 1888호(2009년)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제공해줄 것을 분쟁 중 성폭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에게 요청한다.

18. 결의 1820호(2008년)와 1888호(2009년)의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계속해서 안보리에 제출하며, 결의 1820호, 1888호, 그리고 현 결의의 이행에 관한 다음 보고서를 2011년 12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특히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 (a) 시기적절하며 윤리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자세한 조율과 전략 계획서
- (b) 본문 문단 8에 언급된 것과 같이 모니터링, 분석, 보고 조치의 이행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
- (c)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또한 안보리 의제가 다루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부록으로 첨가.
- (d) 상주조정시스템(Resident Coordination), 인도주의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유엔 국가 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이 전문가 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절한 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유엔 작전팀이 성폭력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최신 정보.

19.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3) 유엔 회원국가의 의무

유엔 회원국가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통합하고 1325호를 집행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정부는 평화 안보분야에서의 성주류화 관점을 강화한다.

둘째, 정책결정과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추구한다. 갈등의 예방•관리•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 제도적 차원의 모든 정책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수를 증가 시켜야 한다. 협상과 평화 과정에 있는 모든 행위자들은 배상, 재정착, 재건, 재통합, 갈등 이후 재건과정에서 여성의 특별한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지 여성의 평화 제안과 갈등해결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기구에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여성과 여아를 보호한다.

넷째, 평화유지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유지활동 관계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한다. 국가행동계획에 안보리 결의 1325호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한다. 1. 국내외 정책에 젠더의식을 포함한다. 2. 성주류화에 대한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젠더 감시와 조사를 포함한다. 3. 정부 부처간,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반(TF)을 조직한다. 4. 1325호 이행을 모니터하고, 이행을 책임질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5. 1325호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한다. 6. 1325호 이행을 위한 시간표를 작성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며, 모니터와 보고체계를 포함한다.

여섯째, 워크숍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325호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